

4.4.1 교원업적평가관리규정

제정	1995. 09. 12.	개정	2013. 08. 06.	개정	2020. 11. 26.
개정	1998. 09. 16.	개정	2015. 07. 01.	개정	2021. 06. 02.
개정	2003. 04. 11.	개정	2016. 08. 11.	개정	2021. 09. 29.
개정	2003. 07. 09.	개정	2016. 11. 15.	개정	2021. 11. 29.
개정	2006. 11. 24.	개정	2018. 02. 27.	개정	2022. 06. 09.
개정	2007. 05. 29.	개정	2018. 09. 05.	전부개정	2023. 03. 01.
개정	2010. 02. 12.	개정	2018. 10. 23.	개정	2023. 09. 27.
개정	2010. 04. 13.	개정	2019. 12. 03.	개정	2024. 02. 07.
개정	2012. 09. 26.	개정	2020. 03. 31.	개정	2024. 10. 07.
전부개정	2012. 12. 28.	개정	2020. 09. 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교원의 업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 교원의 업적평가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 ②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본부 차·실장, 도서관장, 산학협력단장, 학생성공진흥원장, 정보전산원장, 국제교류교육원장, 비행교육원장, 재정지원사업단장, 부처장 및 생활관장은 교원업적평가 대신 별도의 보직자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평가대상기간) 업적평가 대상기간은 업적평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업적구분 및 정의) ① 교원업적이라 함은 평가대상기간 내에 얻어진 교육, 연구 및 봉사분야, 산학협력실적분야 등의 활동결과와 실적을 말한다.

- ② 교육업적이란 수업, 학사운영 및 학생지도 등과 관련된 실적을 말한다.
- ③ 연구업적이란 교원의 전공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창의적 연구 및 창작활동의 결과물,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발표실적과 산학협력에 따른 연구비 수탁 등과 같은 결과를 말한다. 단, 체육, 조리, 뷰티 분야 등의 교원으로서는 학술적 활동보다는 실기활동을 위주로 하는 교원은 해당 분야 실기업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
- ④ 봉사업적이란 교육과 연구업적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발전을 위한 교내봉사, 교외(학술)단체 및 기관에 대한 봉사활동, 재학생 지도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⑤ 산학협력실적이란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서 학생현장실습지도, 학생창업지도 등 산·학협력분야 결과물을 말한다.
- ⑥ 특임평가란 특임교원의 특임업무영역에 대한 성취도평가 실적을 말한다.

제6조(업적평가분야 및 평가방법) ① 교원의 업적은 교육분야, 연구분야, 봉사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특임교원의 경우 연구분야 평가는 제외하고 산학협력실적, 특임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② 평가분야별 업적평가 점수의 만점은 각각 100점으로 한다. 단, 산학협력실적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취득점수가 만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점수를 모두 인정한다.
- ④ 교원업적평가 점수는 교육, 연구, 봉사분야의 취득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한다. 단,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경우 해당 평가 분야의 취득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한다.

제7조(평가의 예외 인정)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1. 평가 대상 기간 중 4월 이후에 임용된 신입교원. 단, 임용일 이후 당해연도 업적에 대하여 통합정보에 입력하여야 한다.
 2. 평가 대상 기간 중 만 64세 이상 교원
 3. 연구년, 국내외 파견, 병가 등의 사유로 평가 대상기간 동안 업적이 없는 교원
- ② 학기 단위로 평가하는 항목 중 연구년, 국내외 파견, 병가 등의 사유로 평가 대상기간 동안 1개 학기의 업적만 있는 경우 1개 학기의 업적을 평가 대상기간의 업적으로 환산한다.
- ③ 제3조 제2항의 교원은 보직을 면한 후 1년간은 각 영역별로 '당해연도 업적평가의 점수' 또는 '보직기간 직전 2년간 업적평가의 평균점수' 중 본인이 선택한 점수를 당해연도의 업적으로 인정한다.
- ④ ①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승진, 재임용 등 교원의 인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 ⑤ 기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한다.

제8조(업적평가의 활용) 교원업적평가는 정년보장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연구년제에 따른 파견선발, 업적우수교원의 특별지원,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 등에 활용한다.

제2장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제9조(구성) ① 본 대학교에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연구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기획연구처 직원으로 한다.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업적평가 결과 확인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의 재심 청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다만 부결 시에는 반드시 그 부결사유를 상세히 기록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교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의무) 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절차

제15조(평가절차) ① 교원은 평가대상 기간의 업적에 대해 통합정보시스템에 수시로 입력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기획

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업적 제출기한 및 승인은 <별표 7>에 따르고, 제출된 업적은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거쳐 승인한다. 제출기한을 경과하거나 증빙자료 및 서류가 미비된 업적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② 기획연구처는 증빙자료와 개인별 평가조사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항목별 취득점수를 기재하여 평가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교원업적평가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적평가점수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교원에게 통보한다.
- ④ 통보받은 업적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근거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재심위원회는 재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위원장은 교원 중 심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명의 교원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⑤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증빙자료와 개인별 평가조사서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재심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감점 처리한다.
- ⑥ 기획연구처는 5월 말까지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최종 확정된 후, 각 교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4장 교육업적평가

제16조(교육업적평가기준) 교원의 교육업적 평가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별표 1-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르며, 관련 규정 또는 평가조항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정규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제17조(강의평가) 강의평가는 강의평가운영규정에 의한 교수평점 결과를 반영한다.

제18조(교과목 포트폴리오) ① 매 학기 말 교육내용의 지속적인 개선 및 자율 순환적 교육과정 개편에 이용될 강의계획서, 출석부, 성적산출기준표, 평가자료 및 결과물, 과제 및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②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자료가 미흡한 경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감점 처리한다.

제19조(강의품질개선보고서) ① 매 학기 정규교육과정 학사과정 담당 교과목에 대한 강의품질개선(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보고서(이하 'CQI 보고서')를 성적입력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교과목 교육목표
2. 핵심역량 또는 전공능력 제고 관련 연계성
3. 이전학기 비교 개선실적(교육내용 및 방법, 평가방법, 교육환경 등)
4. 이전학기 학생 요구사항 반영 결과
5. 다음 학기 개선할 사항(교육내용 및 방법, 평가방법, 교육환경 등)

② 강의개선위원회의 CQI 보고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학기당 최대 5점을 반영하며, 보고서 내용 중복 또는 내용 부적합 등 불성실하게 기재한 경우와 보고서 미제출 강좌의 경우 강좌당 1점씩 감하여 반영한다.

제20조(강의학점) ①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학기당 정규학사과정 교과목 6학점 포함 12학점을 기본강의학점으로 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계약으로 정한 강의학점을 기본강의학점으로 하며, 보직교원의 경우는 '책임강의학점 및 강의비 지급 규정'의 책임강의학점을 기본강의학점으로 하며 기본강의학점 초과분에 대하여 1학점당 1점을 부여한다.

② 강의학점은 '책임강의학점 및 강의비 지급 규정'에 의해 계산한다.

- ③ 책임강의학점을 감면받는 교원의 필수 정규학사과정 강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학점 이하: 없음
 2. 9학점: 6학점. 단, 간호학과 소속 교원은 6시수
- ④ 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 소속 교원은 시수를 기준으로 하며, 학기당 10시수 (정규학사과정 6시수 포함)를 기본강의시수로 본다. 단, 기본강의시수는 본 규정에만 적용한다.
- ⑤ 1항에도 불구하고 P/N 등 학점이 없는 교과목에 대해 시수를 기본강의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교과목으로 인해 기본강의학점 초과분이 발생할 시 연간 3점까지만 인정하며 기본강의학점은 본 규정에만 적용한다.
- ⑥ 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술교육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의 강의학점을 기본강의학점에 포함한다.

제21조(수업편성일) ① 매 학기당 주당 4일을 기본으로 하여 5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외의 경우도 5점을 부여한다.

1. 입학홍보TFT : 주당 3일
 2. 책임강의학점이 9학점 교원 : 주당 2일
 3. 책임강의학점이 6학점 이하 교원 : 주당 1일
- ② 기본 수업편성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일당 1점을 감한다.
- ③ 학부 및 대학원, 항공기술교육원 교육과정 편성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는 비대면 수업은 제외한다. 단, 전 과목이 온라인수업으로 편성된 경우는 1일로 인정한다.
- ④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평가하지 않는다.

제22조(학사관리) ① 학사관리 지수는 정규 학사과정의 학기별로 담당하는 전 강좌를 총괄하여 '1-(A학점 비율 + 0.6×B학점 비율 + 0.2×C학점 비율)'로 산정한다.

② 학기 당 학사관리의 인정점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9.27.>

학사관리 지수	0.16미만	0.16이상 ~ 0.20미만	0.20이상 ~ 0.24미만	0.24이상 ~ 0.28미만	0.28이상 ~ 0.32미만	0.32이상
점 수	0	1	2	3	4	5

제23조(학생지도충실도) ① 각 교원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50회 이상 면담하고 학생이력관리시스템에 면담일지를 입력해야 하며, 면담일지의 충실도를 평가할 수 있다. 단, 소속학과가 없는 교원은 상담 희망학생을 면담하고 면담일지를 작성해야한다.

- ② 학생지도(상담)만족도는 면담학생 전부 또는 일부를 조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만족도 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는 면담일지 작성 점수를 부여한다.
- ③ 학기당 50회 이상 면담을 실시한 경우, 최대 100회까지 인정한다.

제24조(기타교육활동) ① 교원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동아리 지도 포함) 및 교수법 개선 관련 각종 워크숍(세미나), 프로그램, 강의모니터링 참여 활동 등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다. <개정 2023.09.27.>

- ②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지도의 경우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09.27.>
- ③ '비교과 프로그램'과 '동아리 지도'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09.27.>
 1. 연도 및 학기, 프로그램명, 교수명 <개정 2023.09.27.>
 2. 비교과 프로그램 또는 동아리 활동 목표 및 주별 활동계획
 3. 학생 명단 및 출석부
 4. 프로그램 자료 및 주별 실적(결과물 및 사진)

④ 교수법 개선 관련 활동은 다음 각 호로 하되 대학본부 및 센터에서 인정하는 활동에 한한다. <개정 2023.09.27., 2024.02.07.>

1. 교수법 개선 관련 워크숍(세미나)
2. 삭제 <2023.09.27.>
3. 강의모니터링
4. 기타 대학본부 및 센터에서 주관 또는 인정하는 관련 모임 <개정 2024.02.07.>

제25조(강의방법혁신) 다음 각 호와 같은 강의방법혁신(수업방법다양화) 활동에 대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

1. PBL, TBL, DBL, 액션러닝, 플립러닝 등 학습자 중심 강의방법
2. 수업계약제
3. 정주대학 관련 야간강좌
4. K-MOOC 탑재 이러닝과목
5.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

제26조(기타감점조항) ① 무단결강 및 보강계획 미준수(보강이행보고서 미제출 포함)는 회당 3점을 감한다. 단, 보강이행보고서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회당 1점을 감한다.

- ② 강의시간 및 강의실 무단변경은 회당 1점을 감한다.
- ③ 동일 요일 내 시간표 분할 입력(중간 공백시간) 강좌당 1점을 감하며,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0.07.>
- ④ 강의계획서를 입력기한 내(수강신청 개시일 전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한다. 다만, 강좌 담당교수가 변경되거나 신규로 지정된 경우 변경 또는 지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를 입력기한으로 한다.
 1. 지연입력: 수강신청 개시일로부터 개강일 전일까지 입력 완료한 경우 강좌당 1점 감점
 2. 미입력: 개강일 이후 입력(미완료 포함) 하거나 성적입력 직전 평가방법이나 강의방법을 변경(오류입력 포함) 하는 경우 강좌당 2점 감점 <개정 2024.10.07.>
- ⑤ 기본강의학점(시수) 또는 정규학사과정 강의학점(시수) 미달 시 1학점당 3점을 감한다<개정 2024.10.07.>
- ⑥ 성적정정 기간 경과 후 교수의 착오로 성적을 정정(등급 변경)하게 되거나, 사실조사 또는 감사 등으로 성적부여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 건당 1점을 감한다.
- ⑦ 다음 각 호 해당시 감점 처리한다.
 1. 강의평가 결과 교수법 연수 또는 강의클리닉 코스를 이수하지 않거나, 강의개선계획서 미제출 시 회당 3점 감점
 2. 임용 후 1년 이내 신입교원이 교수법 또는 강의클리닉코스 정해진 기한 내 미 이수시 3점 감점
 3. 성적입력 기한 내 성적 미입력 강좌당 2점 감점
 4. 출결관리 미흡, 교과목 포트폴리오 및 성적평가자료 미제출 강좌당 3점 감점(다음 학기 개시 전 제출 시 1점 감점) <개정 2024.10.07.>
 5. 전체 교원 대상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법 프로그램 미 이수시 회당 1점 감점
 6. 기타 학사 부적절 행위(위원회 심의)
- ⑧ 학사지도 미흡(졸업대상자인 지도학생의 졸업불가 사유 발생시) 건당 5점 감점<개정 2024.10.07.>
- ⑨ 간호교육인증평가에 따라 간호학과 소속교원의 경우 간호분야 임상연수 및 교수연수 프로그램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1시간당 2점 감점한다. <신설 2024.02.07.>

제5장 연구업적평가

제27조(연구업적평가기준) 교원의 연구업적 평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단, 특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외국인 교원은 제외한다.

제28조(연구논문) ① 국제등재학술지란 SCIE, SSCI 및 AHCI에 등재된 전문학술지를 말한다.

- ② 국제저명학술지란 SCOPUS에 등재된 전문학술지 및 국내에서 발간되는 SCIE에 등재된 전문학술지를 말한다.
- ③ 국내등재학술지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등재 및 등재후보)된 학술지를 말하며 등재학술지와 등재후보학술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④ 국내·외 기타학술지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학술지로서 국내·외의 전문학술단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전체를 논문으로 구성하여 출판한 학술지를 말하며 연간 2편까지만 인정한다.
- ⑤ 연구논문은 본교에 임용된 이후 발표한 것으로서 연구자의 소속이 '초당대학교'로 명기된 연구실적물에 한한다.
- ⑥ 연구논문은 KRI 시스템에서 검증완료된 것에 한하며, 평가기간 내에 검증을 할 수 없는 연구논문의 경우 별쇄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업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단, 국내·외 기타학술지에 대해서는 별쇄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⑦ 연구논문의 저자 또는 학술회의의 발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단, 주저자 및 교신저자의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자 순에 의해 주저자,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로 본다.

$$1. \text{ 주저자 및 교신저자} = \frac{2}{n+2} \times \text{점수}$$

$$2. \text{ 공동저자} = \frac{1}{n+2} \times \text{점수}$$

- ⑧ 실기업적 평가를 원하는 교원은 제9장에서 정한 실기업적을 연구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

제29조(저역서) ① 저역서는 국제표준책번호(ISBN)를 받은 저작물을 말하며, KRI 검증 및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평가기간 내에 검증을 할 수 없는 저역서의 경우 제출된 원본을 참고하여 업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 ② 역서의 경우 원저자의 출간동의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저역서를 심의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④ 저역서S는 기존의 이론과 대비되는 독창적인 논리가 전개되어 있는 저역서로서 다음 각 호를 동시에 만족한 경우를 말한다. 단, 위원회에서 이와 동일한 수준의 저서로 인정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1. 국판기준 300쪽 이상
 2. 연구논문 인용편수 150개 이상
- ⑤ 저역서A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이와 동일한 수준의 저서로 인정된 경우 이를 포함한다.
 1. 국판기준 200쪽 이상
 2. 연구논문 인용편수 100개 이상
- ⑥ 저역서B는 교양도서, 대학교재, 학술사전, 초중고 교과서 등을 말한다. 단, 교양도서 및 대학교재는 150쪽 이상의 분량이어야 하며, 초중고 교과서는 국제표준책번호(ISBN) 등록 조건에서 예외로 한다.

- ⑦ 저역서C는 100쪽 이상의 분량으로 제작된 수험서, 문제집 등을 말하며 연간 2권까지만 인정한다. 단, 실험실습 지침서는 제외한다.
- ⑧ 원본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전자책인 경우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자수, 줄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 ⑨ 저역서의 저자가 여럿인 경우 1/n 로 인정한다.
- ⑩ 개정판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30조(학위논문) ① 학위논문은 본교 재직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② 기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교원의 계열/학과 변동 등으로 신규 취득한 경우 인정한다.
- ③ 임용 시 석·박사 학위 미소지자의 신규 학위 취득과 관련 최초 석·박사학위는 미인정한다.

제31조(학술회의활동) ① 학술회의 발표는 증빙자료(proceedings)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KCI급 이상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 및 동급 단체 및 기관의 학술대회에 한하며, 동일 학술회의의 발표 및 중복발표 실적은 중복 인정한다.

- ② 국제학술회의는 개최장소와 관계없이 영어로 진행되며, proceeding이 영어인 학술회의를 말한다.
- ③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에 참여만 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신설 2024.02.07.>
- ④ 제1항 ~ 제3항의 경우 연간 2회까지만 인정한다. <항 번호 변경 2024.02.07.>

제32조(교수법연구활동) 교수학습개발센터에 등록된 교수공동체 활동에 대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자체평가위원회의 인증을 거쳐 최대 10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3.09.27.>

- 1. 삭제 <2023.09.27.>
- 2. 삭제 <2023.09.27.>

제33조(TFT활동) ① 입학홍보 지원 TFT 활동은 연구점수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입학홍보 지원 TFT활동 점수는 기여도에 따라 차등 인정할 수 있으며, 기여도는 입학처 자료를 받아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평가한다.
- ③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사업신청 TFT 활동의 결과로 50쪽 이상의 보고서를 집필했을 경우만 연구점수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대학자체평가 TFT 활동의 결과로 50쪽 이상의 보고서를 집필했을 경우만 연구점수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위 제3항과 제4항의 쪽수 계산은 증빙자료는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산학협력 실적) ① 외부지원연구비는 연구비 총액을 말하며,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계약이 체결되고 간접연구비를 납부한 것만을 인정한다. 단, 당해 연도 연구비 총액에 대하여 평가하며,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비는 당해연도분만 인정한다.

② 연구비 수혜와 관련한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의 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한다.

$$1. \text{ 연구책임자} = \frac{2}{n+1} \times \text{점수}$$

$$2. \text{ 공동연구자} = \frac{1}{n+1} \times \text{점수}$$

- ③ 연구과제 제안은 연구책임자에 한하여 연간 2건을 인정한다. 단, 총장, 산학협력단장 또는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한국연구재단 및 광역자치단체 이상의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비 수혜와 중복 인정한다.
- ④ 특허는 국제와 국내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대학의 직무발명(출원인이 산학협력단)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 ⑤ 공동특허의 경우는 $1/n \times$ 배점으로 산정한다.
- ⑥ 산업체 기술이전은 본교에 수입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며, 공동명의일 경우 $1/n \times$ 배점으로 산정한다.

제6장 봉사업적평가

제35조(봉사업적평가기준) ① 교원의 봉사업적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 ② 봉사업적은 기간이 명시된 자료에 의하여 월할 계산한다. 단, 위촉(임명)기간이 평가대상기간 내 10개월 이상인 경우는 1년으로 인정한다.
- ③ 평가항목별 검증이 경우 제출된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제36조(교내보직) 2개 이상의 보직이 있는 경우 중복으로 인정한다.

제37조(위원회)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회 활동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단, 교내보직자 중 교내보직 봉사 점수 10점 이상 대상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38조(TFT활동) ① 교원의 TFT 활동은 <별표 3>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 제35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 ② 기타 TFT활동은 교원이 위원회 및 TFT 활동의 결과로 20쪽 이상의 보고서를 집필하거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만 인정한다.
- ③ TFT활동 점수는 기여도에 따라 차등 인정할 수 있으며, 기여도는 위원(팀)장에게 자료를 받아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평가한다.

제39조(기타 교내봉사) ① 생활관 지도교수, 예비군 대(중)대장에 대하여 봉사점수를 인정한다.

- ② 대학홍보활동 참여, 신입생유치활동 참여는 주관부서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며 회당 1점을 부여하되, 연간 10점까지 인정한다.

제40조(학술봉사) ① 학술봉사는 등재지를 발간하는 학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위촉장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5점까지만 인정한다.

- ② 동일학회 또는 동일 성격의 기관에서 두 가지 이상의 직을 맡을 경우에는 상위 점수만을 인정한다.

제41조(사회봉사) ① 공공기관의 자문 및 심의활동은 위촉장 또는 출장원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10점까지만 인정한다.

- ② 국가위원회 활동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부·처·청)의 위촉에 의해 위원회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③ 광역지방자치단체 활동은 단체장의 위촉에 의해 위원회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④ 시(군)단위 위원회 활동은 시장 및 군수의 위촉에 의해 위원회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⑤ 단, 간호교육인증평가에 따라 간호학과 소속교원의 경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간호 관련 사업, 대한간호협회 및 산하단체, 한국간호과학회 및 산하단체,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기타 보건 관련 단체에서 임원 및 위원 등으로 활동한 수행실적을 위의 제2항 ~ 제4항에 맞춰 인정한다. <신설 2024.02.07.>

제42조(시험출제 및 심사) ① 각종 시험출제 및 심사활동은 의뢰공문과 출장원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연간 10점까지만 인정한다.

- ② 국가고시, 국가시험 출제는 공무원 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간호교육인증평가에 따라 간호

학과 소속교원의 경우 간호사국가시험 및 전문간호사 자격시험도 인정한다. <개정 2024.02.07.>

- ③ 공공기관의 심사 활동은 공공기관 및 군단위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위촉된 심사위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다수의 동일한 공공기관의 심사는 연 1회로 인정한다.

제43조(방송출연 및 신문기고) ① 방송출연 및 신문기고활동은 출연 및 신문기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20점까지만 인정한다.

- ② 방송출연은 공중파(TV 및 라디오), 케이블TV(IPTV 포함) 방송에 사회자, 토론자, 패널, 해설자, 강연, 인터뷰 등으로 출연한 경우 최대 10점/회 인정한다. 단, 본교 교원 신분으로 출연하여야 하며, 점수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신문기고는 중앙, 지역의 일간신문에 본교 교원으로서 기고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44조(수상실적) 교육, 연구,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본인 명의로 수상한 경우에 한한다.

제45조(학생지도) ① 재학생 충원율은 소속학과별로 교원 1인당 10점(학과충원율 95% 이상 학과), 5점(학과충원율 90% 이상 95% 미만 학과), -5점(학과충원율 85% 이상 90% 미만 학과), -10점(학과충원율 80% 이상 85% 미만 학과), -20점(학과충원율 70% 이상 80% 미만 학과), -30점(학과충원율 70% 미만 학과)을 부여한다.

- ② 학과취업률(입학시 기취업자 제외)은 소속학과별로 교원 1인당 10점(학과취업률 85% 이상 학과), 5점(학과취업률 80% 이상 85% 미만 학과), 0점(학과취업률 75% 이상 80% 미만 학과), -5점(학과취업률 70% 이상 75% 미만 학과), -10점(학과취업률 65% 이상 70% 미만 학과), -15점(학과취업률 60% 이상 65% 미만 학과), -20점(학과취업률 60% 미만 학과)을 부여한다.

- ③ 편제정원 또는 대상 학생이 없는 학과는 0점 처리한다.

제46조(기타 감점조항) ① 평가기간 중 징계를 받은 교원은 봉사업적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점한다.

1. 중징계: 50점
2. 경징계: 30점
3. 경고 : 10점

- ② 전체교수회의 및 대학공식모임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경우 회당 2점을 감한다.

- ③ 교원업적평가 점수와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당 최대 20점을 감한다.

제7장 산학협력실적평가

제47조(산학협력실적평가 대상) 산학협력실적평가는 산학협력중점교원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하며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제48조(평가기준 및 방법) 산학협력실적평가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1. '현장실습지도'의 평가는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목에 한하며 학생현장실습규정에 따라 학교와 산업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확정된 운영계획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 경우 평가한다.
2. '캡스톤디자인 지도'의 평가는 캡스톤디자인운영규정에 따라 캡스톤디자인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교과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위탁교육프로그램개발'의 평가는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재직자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한 실적을 평가한다.

4. '학생취업 연계'의 평가는 학생의 취업을 위하여 기업연계·취업지도·컨설팅 등 취업 전반에 대하여 지원한 실적(기업확인서·특강·진로지도·취업 추천서·학생 확인서 등) 또는 산업체-담당교수-학생의 취업 연계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5. '학생창업 지도'의 평가는 학생창업 지원 과정 및 학생의 창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6. '기술·경영지도'의 평가는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연구수행 결과 등을 활용하여 산업체에 기술 또는 경영지도를 실시한 실적을 평가한다.
7.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의 평가는 대학과 산업체 간의 산학협력 계약 또는 협약 체결한 후 산업체에 자문·기술지원 등을 실시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며, 유료회원제 가족회사로 등록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8. '산업체 파견활동'의 평가는 연구년 또는 방학기간 동안 산학협력단과 협약이 체결된 국내외 기업에서 1개월 이상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을 평가한다.
9. '산업체 방문특강'의 평가는 산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방문/초청 특강을 실시한 실적에 대하여 증빙자료(산업체 확인서, 사진과 교육자료 등) 제출시 평가한다.
10. '산업체 교보재 기부(기증)'의 평가는 자산가치 1억 이상의 교보재를 획득한 경우 기부금영수증의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8장 특임평가

제49조(특임평가대상) 특임평가는 특임교원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제50조(평가기준 및 방법) ① 특임평가는 <별표 5>의 특임교원 업적평가서를 기준으로 부여된 특임업무에 대해 연2회(1월~6월, 7월~12월)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임용시기에 따라 평가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평가자는 총장, 교무부총장, 교무처장, 관할 부서장이 각각 성취도를 평가하며, 점수를 취합하여 평균값을 도출하고 연평균 점수로 적용한다.

③ 특임평가는 교무처에서 진행하며 평가 결과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통보한다.

제9장 실기업적평가

제51조(실기업적 평가) ① 실기업적은 연구논문실적과 중복평가 한다.

② 학생지도 및 본인 실적은 연간 2건만 인정한다.

③ 지도학생이 동일 대회에 여러 명이 입상한 경우 최고 성적 1건만을 인정하고, 동일 국제대회의 국가대표에 여러 명이 선발되는 경우 인정한다.

제52조(체육분야 평가) ① 체육분야 실기업적의 평가는 <별표 6-1>의 기준을 따른다.

② 본인참가는 선수만 인정한다.

③ 국제대회 A급은 대한체육회가 인정하는 국제대회로서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또는 30개국 이상 참여하는 기 대회와 동급으로 인정된 대회에 한한다, 국제대회 B급은 국제대회 A급 이외의

대회로서 10개국 이상, 국내 선수의 참여 비율이 20% 미만인 대회를 말한다.

- ④ 전국대회 A급은 전국체전 등 선발을 거쳐 자격을 부여받아 참여하는 대회로 대한체육회가 인정한 대회를 의미하며, 전국대회 B급은 전국대회 A급을 제외한 대회를 말한다.

제53조(조리분야 평가) ① 조리분야 실기업적의 평가는 <별표 6-2>의 기준을 따른다.

- ② 국제대회 A급은 국제기능올림픽 또는 30개국 이상 참가대회로 기 대회와 동급으로 인정된 국제대회를 말한다.
- ③ 국제대회 B급은 국제대회 A급 이외의 대회로서 10개국 이상, 국내 선수의 참여 비율이 20% 미만인 국제대회를 말한다.
- ④ 전국대회란 전국규모의 조리관련 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 이상에서 주최하는 대회를 말한다.

제54조(뷰티분야 평가) ① 뷰티분야 실기업적의 평가는 <별표 6-3>의 기준을 따른다.

- ② 국제대회 A급은 국제기능올림픽 또는 30개국 이상 참가대회로 기대회와 동급으로 인정된 국제대회를 말한다.
- ③ 국제대회 B급은 국제대회 A급 이외의 대회로서 10개국 이상, 국내 선수의 참여 비율이 20% 미만인 국제대회를 말한다.
- ④ 전국대회란 전국규모의 뷰티관련 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 이상에서 주최하는 대회를 말한다.

제10장 기 타

제55조(특별점수) ① 장학금, 기부금, 발전기금 유치의 기여는 100만원당 4점을 봉사영역에 특별점수로 부여한다. 단, 산학협력단 대학 재정 기여는 100만원당 1점을 부여한다.

- ② 우수 신입생 유치에 대하여 봉사영역에 특별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매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기획연구처장이 공지한다.
- ③ 산학협력중점교수, 특임교수의 경우 연구실적이 있을 경우 봉사영역에 특별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배점기준은 기존 연구실적점수의 50%만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05학년도 교원업적평가까지는 기존 교원업적평가관리규정의 교원 업적 평가 영역별 최소 소요점수 비율을 적용하고, 2006학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교원업적평가관리규정 교원승진·재임용에 대한 영역별 최소 소요 반영률을 적용한다.
3. (경과조치) 교원업적평가 비율의 계산은 (2005학년도까지 평가비율+2006학년도부터 평가비율)/(소요연수)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12년도 평가에 한하여 틀립트랙 교원은 연구영역 점수가 300점을 초과한 경우, 초과점수의 일부를 봉사영역 점수로 전환할 수 있다. 단, 전환점수는 6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규정) ① 이전 규정에 의해 평가받은 2013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업적은 2013년도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연구논문과 대학재정기여는 이전 규정과 중복하여 평가한다.
② 연구논문은 2013년도 평가에 한하여 1년간(2013.1.1~12.31)의 실적으로만 평가한다.
③ 제8조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간 동안 이 규정에 의한 업적평가점수가 없을 시 평가유형에 따라 해당유형 전체교원의 평균값을 적용하고, 평가점수가 1년분만 있는 경우는 해당 점수를 업적평가의 점수로 인정한다.
③ 제25조 제3항은 2013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도 평가부터 시행한다.
2. 제44조(기타 감점조항)는 이 규정 공포일 1개월 후부터 적용한다.
3. 부칙 (제230호) 제2항의 “최소 소요점수 비율을 적용하고”는 “최소 소요점수 비율을 적용하고”를 말하며, “최소 소요 반영률을 적용한다”는 “최소 소요 반영률을 적용한다”를 말한다.
4. 부칙 (제343호) 제2항의 ‘2013학년도 평가’는 ‘2012년도 평가’를 말한다.
5. 부칙 (제346호) 제2항 제1호의 “2014년 평가의 대상이”는 “2013년도 평가의 대상이”를 말한다.
6. 부칙 (제346호) 제2항 제2호의 “연구논문은 2014년 평가에”는 “연구논문은 2013년도 평가에”를 말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2015년 평가에 한하여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 ① 재정기여도와 연구논문 실적은 2014년 실적 50%, 2015년 실적 100%로 계산하여 합산하며, 실적 산정은 직전 규정의 봉사중심형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 ② 연구분야와 봉사분야의 만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① 강의품질개선보고서는 2016학년도 2학기 점수를 2배하여 산정한다.
 - ② 강의학점 및 학생지도 충실도는 이전 규정으로 산출한 점수와 개정 규정으로 산출한 점수 가운데 큰 점수를 인정한다.
 - ③ 전 항에도 불구하고 강의학점 초과 점수는 연구분야 점수로 이월할 수 있다.
 - ④ 강의학점 점수 감점 조항은 2016학년도 평가에 한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9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감점조항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개정규정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교육분야 평가항목 및 배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생지도충실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개정규정은 2021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교육분야 평가항목 및 배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2021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2022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단, 2021년도 9월 1일 자 신규임용교원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강의학점에 관한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2021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1. 이 개정규정은 2022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2. 제25조(기타감정조항)제8항 학사지도미흡 감점조항은 2023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1. 이 전부개정규정은 2023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2. 제22조(학사관리) 제②항 학기당 학사관리 인정점수는 2022학년도 2학기 교육분야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24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교육인증평가관련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2023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5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별표 1-1> 교육분야(정년트랙 전임교원) 평가항목 및 배점 <개정 2024.02.07.>, <개정 2024.10.07.>

구분	평가항목		점수	비고	
수업 (30점)	강의평가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당 최대 10점 교수평점평균 이상: 10점 교수평점평균 미만: 교수평점 x 2 점 (소숫점 첫째자리 반올림) 	
	강의품질개선(CQI) 보고서		최대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과목(계약학과 포함) 학기당 최대 5점 내용중복/부적합 또는 미제출시 -1/강좌 	
학사 운영 (20점) (단, 강의 학점은 제한없음)	강의학점 - 기본강의학점(학기당 12학점) 초과분 : 정규학사과정 6학점 필수 - (간호학과) 강의시수 적용(학기당 10시수) 초과분 : 정규학사과정 6시수 필수 포함 - P/N 등 학점 없는 교과목 시수를 학점으로 인정 : 단, 기본강의학점 초과 시 연 3점 인정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점수 없음 초과시 1점/1학점 책임학점 감면받는 교원은 달리함 	
	수업편성일(매학기: 주당 4일)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당 5점 (미달시 -1점/1일) 입학홍보 지원 TFT : 주당 3일 책임강의학점 9학점 교원 : 주당 2일 책임강의학점 6학점 이하 교원 : 주당 1일 	
	학사관리(총 담당강좌 상대평가 비율)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당 5점 	
학생 지도 및 교육 활동 (30점)	학생지도 총실도 (10점)	상담일지 작성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일지 작성 비율 (학기당) - 면담일지 작성 수/50 x 2.5 (최대 100회 인정) 	
		학생지도(상담)만족도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족도 조사. 단, 만족도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는 면담일지 작성 점수를 부여함 	
	기타 교육활동 (20점)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동아리 지도 포함) - 결과보고서 제출(10시간/학기당)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당 5점 최대 10점 인정 	
		교수법 개선 관련 대학본부 및 센터 워크숍 및 각종 프로그램, 강의모니터링 참여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당 2.5점 최대 4건 인정 의무 이수 프로그램은 제외 	
강의방법혁신 (10점)	강의방법 다양화 - PBL, TBL, DBL, 플립러닝, 액션러닝 등, 수업계약제, 경주대학 야간강좌), 이러닝(K-MOOC탑재) 과목 운영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좌당 2.5점(학기당 최대 2강좌 인정) 	
기타 감점조항	무단결강, 보강계획 미준수(보강이행보고서 미제출 포함)		-3점/회		
	보강이행보고서 기한내 미제출		-1점/회		
	강의시간 및 강의실 무단변경		-1점/회		
	동일 요일 내 분할 시간표 입력(공백시간 포함 시간표 배치)		-1점/강좌		
	강의계획서 기한내 미입력	지연 입력	-1점/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력 기한 미준수, 미완료포함 	
		미입력	-2점/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 개시일까지 미입력, 미완료포함 	
	기본강의학점(시수) 또는 정규학사과정 강의학점(시수) 미달		-3점/1학점		
	성적입력 기한 내 성적 미입력		-2점/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적정정기간 중 성적입력 포함 성적입력 미완료 포함 	
	성적 정정(등급 변경), 감사, 성적부여 오류 발생 (강의평가 결과)교수법 및 강의클리닉 미이수 또는 강의개선계획서 미제출		-1점/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적입력 기한 외 정정 	
	출결관리 미흡, 교과목 포트폴리오 및 성적평가 자료 미제출		지연제출	-1점/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 기한 종료 후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제출
			미제출	-3점/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미제출
			일부 미제출	-1점/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미제출 시 -1점/강좌
	전체 교원 대상 교수법 프로그램 미이수		-1점/회		
	학사지도 미흡(졸업대상자인 지도학생이 졸업불가 사유 발생)		-5점/건		
교육분야 관련 교원윤리규정 미준수		최대-3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심의(최대 -3점/회) 		
간호분야 임상연수 및 교수연수 프로그램 연간 8시간 이상 미이수		-2점/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호학과 소속교원 한정 		

〈별표 1-2〉 교육분야(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평가항목 및 배점 〈개정 2024.02.07.〉,〈개정 2024.10.07.〉

구분	평가항목		점수	비고
수업 (40점)	강의평가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당 15점 교수평점평균 이상: 15점 교수평점평균 미만 : 교수평점 x 3점 (소숫점 첫째자리 반올림)
	강의품질개선(CQI) 보고서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당 5점 전과목(계약학과 포함) 내용중복/부적합 또는 미제출시 -2점/강좌
학사운영 (20점)	강의학점 - 계약으로 정한 책임강의학점(시간) - P/N 등 학점 없는 교과목 시수를 학점으로 인정 : 단, 기본강의학점 초과 시 연 1점 인정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당 5점 초과시 1점/1학점 책임학점 감면받는 교원은 달리함
	학사관리(총 담당강좌 상대평가 비율)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당 5점
학생 지도 및 교육 활동 (30점)	학생지도 충실도 (10점)	상담일지 작성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일지 작성 비율 (학기당) - 면담일지 작성 수/50 × 2.5 (최대 100회 인정)
		학생지도(상담)만족도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족도 조사. 단, 만족도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는 면담일지 작성 점수를 부여함
	기타 교육활동 (20점)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동아리 지도 포함) - 결과보고서 제출(10시간/학기당)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당 5점 최대 10점 인정
		교수법 개선 관련 대학본부 및 센터 워크숍 및 각종 프로그램, 강의모니터링 참여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당 2.5점 최대 4건 인정 의무미수 프로그램은 제외
강의방법 혁신 (10점)	강의방법 다양화 - PBL, TBL, DBL, 플립러닝, 액션러닝 등, 수업계약제, 경주대학 야간강좌, 이러닝(K-MOOC탑재) 과목 운영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좌당 2.5점(학기당 최대 2강좌 인정)
기타 감점조항	무단결강, 보강계획 미준수(보강이행보고서 미제출 포함)		-3점/회	
	보강이행보고서 기한내 미제출		-1점/회	
	강의시간 및 강의실 무단변경		-1점/회	
	동일 요일 내 분할 시간표 입력(공백시간 포함 시간표 배치)		-1점/강좌	
	강의계획서기한내 미입력	지연 입력	-1점/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력 기간 미준수, 미완료 포함
		미입력	-2점/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 개시일까지 미입력,미완료포함
	기본강의학점(시수) 또는 정규학사과정 강의학점(시수) 미달		-3점/1학점	
	성적입력 기한 내 성적 미입력		-2점/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적정정기간 중 성적입력 포함 성적입력 미완료 포함
	성적 정정(등급 변경), 감사, 성적부여 오류 발생 (강의평가 결과)교수법, 강의클리닉 미이수 또는 강의개선계획서 미제출		-1점/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적입력 기한 외 정정
	출결관리 미흡, 교과목 포트폴리오 및 성적평가자료 미제출	지연제출	-1점/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 기한 종료 후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제출
		미제출	-3점/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미제출
		일부 미제출	-1점/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미제출 시 -1점/강좌
	전체 교원 대상 교수법 프로그램 미이수		-1점/회	
	학사지도 미흡(졸업대상자인 지도학생의 졸업 불가 사유 발생)		-5점/건	
교육분야 관련 교원윤리규정 미준수		최대-3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심의(최대 -3점/회) 	
간호분야 임상연수 및 교수연수 프로그램 연간 8시간 이상 미이수		-2점/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호학과 소속교원 한정 	

〈별표 2〉 연구분야 평가항목 및 배점 〈개정 2024.02.07.〉

구분	평가항목	점수	비고	
연구 실적	연구논문	국제등재학술지(SSCI, SCIE, AHCI)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연구자 인정
		국제저명학술지(SCOPUS, 국내발간SCIE)	70점	
		국내등재학술지	50점	
		국내등재후보학술지	30점	
		국내외 기타학술지	10점	
	체육,조리,뷰티 분야 실기업적	〈별표 4-1〉 ~ 〈별표 4-2〉	별도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논문과 중복평가
	저역서	저역서S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쪽 이상(인용편수 150개 이상)
		저역서A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쪽 이상(인용편수 100개 이상)
		저역서B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쪽 이상(교양도서, 대학교재, 학술사전, 초중고 교과서 포함)
		저역서C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쪽 이상(수험서, 문제집 등) 실험실습지침서 제외 연간 최대 2권 인정
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사, 박사학위 소지자로 계열/학과 변동 등으로 신규 취득 시만 인정 임용 시 학위 미소지자의 신규 취득 학위 논문은 미인정 	
	석사학위논문	50점		
학술 활동	학술회의	국제학술회의 발표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문형식 구두발표 기준 (포스터발표는 1/2인정) 연간 최대 2회 인정(단, 발표점수 인정 시 참여점수 중복불가)
		국내학술회의 발표	5점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참여	1점	
교책 연구	TFT활동	입학홍보 지원	최대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최대 40점 인정 위원(팀)장의 기여도평가에 따라 차등 인정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사업신청 지원	최대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서 제출시 적용 위원(팀)장의 기여도평가에 따라 차등 인정 승진·재임용시 연구실적으로 제출가능
		대학자체평가	최대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서 제출시 적용 위원(팀)장의 기여도평가에 따라 차등 인정
교육 연구	교수법 연구	교수역량강화연구활동 - 교수공동체 참여(최대 10점)	최대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당 5점 최대 10점 인정
산학 협력	연구 프로젝트	외부지원 연구비	1점/3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비 수혜 총액 기준 (간접연구비 납부한것만 인정)
		연구과제 제안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한 20점(연구책임자만 인정)
	특허 등	국내외 특허 등록	50점/1건(국제) 30점/1건(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되어야 함 공동특허의 경우 1/n으로 인정
		산업체 기술이전	1점/1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 기술이전의 경우 1/n으로 인정

〈별표 3〉 봉사분야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점수	비고	
교내 봉사	교내 보직	부총장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시 중복 인정 • 보직기간은 개월 단위를 올림으로 계산 • 점수는 10개월 이상 보직시 만점을 주며, 그 이하는 월할로 계산 	
		대학원장, 학장, 본부 차·실장	30점		
		산학협력단장, 도서관장, 생활관장, 국제교류교육원장, 비행교육원장, 대학평의위원회장, 정보전산원장, 부처장, 재정지원사업단장, 학생성공진흥원장	20점		
		학과장(학부장 겸직시 0점)	15점		
		부학과장, 센터장, 항공안전보안실장, 드론교육원장, 항공기술교육원장, 본부장, 부단장, 평가팀장	10점		
		부센터장	5점		
	위원회	위원회 위원 참여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회 인정(교내보직점수 10점 이상 교원 불인정) 	
	TFT 활동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사업신청		최대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팀)장의 기여도 평가에 따라 차등 인정
		학문분야평가(교직과정평가 포함)		최대 10점	
		대학자체평가		최대 10점	
		장애학생 실태 보고서		최대 5점	
		기타 TFT		최대 5점	
	입학홍보 지원		최대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최대 20점 • 위원(팀)장의 기여도 평가에 따라 차등 인정 	
기타	생활관 지도교수, 예비군 대(중)대장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점/학기, 최대 5점 	
	대학홍보활동 참가/우수신입생유치활동 참여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점/회(주관부서의 인정) 	
학술 봉사	학회 회장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5점 인정 • 학진등재지에 한함 	
	학회 임원(부회장, 총무이사, 편집위원장)		5점		
교외 봉사	사회 봉사	공공기관 자문 및 심의	국가 위원회 활동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0점 인정 • 동일연도 내 동일 자체단체 동일 위원회 심의 1회 인정
			광역지방자치단체	5점	
			시(군)단위 위원회 활동	2점	
	시험 출제 및 심사위원	국가고시, 국가시험출제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0점 인정 • 동일연도 및 동일기관 중복 불가
		공공기관의 심사		2점	
	기타	방송출연 및 신문기고	공중파·케이블 방송매체 출연	최대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20점 인정
			조선,중앙,동아,한겨레,경향,한국일보 등 주요 일간지, 한국대학신문	5점	
			전남(매일)일보, 광주(매일)일보, 광남일보, 남도일보, 무등일보 등 주요 지방지	3점	
			기타 일간지	1점	
수상	정부 훈장, 포장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포상 → 개인포상점수와 같은 점수 부여 	
	대통령 표창		30점		
	국무총리 표창, 이사장		15점		
	총장, 장관, 도지사 표창		10점		

구분	평가항목		점수	비고
학생 지도	재학생 충원율	소속학과 충원율 95% 이상 : 10점 90% 이상 95% 미만 : 5점 85% 이상 90% 미만 : -5점 80% 이상 85% 미만 : -10점 70% 이상 80% 미만 : -20점 70% 미만 : -30점	최대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년도 10월 대학정보공시 기준 신입생 중 수시, 정시 등록자만 인정 정원내 충원율
	학과 취업률	소속학과 취업률 85% 이상 : 10점 80% 이상 85% 미만 : 5점 75% 이상 80% 미만 : 0점 70% 이상 75% 미만 : -5점 65% 이상 70% 미만 : -10점 60% 이상 65% 미만 : -15점 60% 미만 : -20점	최대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시 기취업자 제외 최근 대학정보공시 기준 평가년도 12월 기준 최종취업률을 당해연도 반영 편제정원 또는 대상 학생이 없는 학과 0점 처리
감점 조항	중징계		-50점	
	경징계		-30점	
	경고		-10점	
	전체교수회의 및 대학공식모임 불참		-2점/건당	
	허위자료 제출		건당 최대 -20점	

〈별표 4〉 산학협력실적평가(산학협력중점교수)

순번	평가지표	평가내용		증빙자료	평가방법	점수(건당)
1	현장실습지도	학생들의 현장실습 ¹⁾ 을 위해 지도교수로 참여한 실적		- 현장실습관련자료 - 출장결과보고서	지도건수	100점
2	캡스톤디자인 지도	학생들이 캡스톤 디자인 ²⁾ 을 통해 제작한 설계물을 교내외 경연대회에 출품하도록 지도하거나 입상한 실적		- 강의계획서 - 운영위원회 승인공문	지도건수	20점
				- 수상자료사본 - 운영위원회 승인공문	입상건수	30점
3	위탁교육 프로그램개발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실적		- 위탁계약 관련서류 - 개발 프로그램	체결건수	50점
4	학생취업 연계	민간 기업	산업체S(종업원 3,000명이상)	- 건강보험공단 확인서 - 학생취업연계 확인서 - 특강·진로지도·학생 확인서 등 증빙자료	취업건수	50점
			산업체A(종업원 1,000명이상)		취업건수	40점
			산업체B(종업원 500명이상)		취업건수	30점
			산업체C(종업원 500명미만)		취업건수	20점
		국가/공공 기관	군 장교/공무원/군무원 7급 이상 임용(임관)		취업건수	50점
			군 부사관/공무원/군무원 9급 이상 임용(임관)		취업건수	40점
5	학생창업 지도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 지도한 실적		- 사업자등록증 - 취·창업지원센터 창업확인서	창업건수	50점
6	기술·경영 지도	연구수행 결과 등을 활용하여 기업 등에 기술 또는 경영지도를 실시한 실적		- 지도 요청공문 - 출장결과보고서	지도건수	20점
7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³⁾	산학 협력 활동	산업체S(종업원 3,000명이상)	- 협약서 - 기업현황자료(규모, 직원 수 등) - 자문/기술지원 실적 증빙자료	체결건수	50점
			산업체A(종업원 1,000명이상)		체결건수	40점
			산업체B(종업원 500명이상)		체결건수	30점
			산업체C(종업원 500명미만)		체결건수	20점
		유료 회원제 가족회사	Gold 등급	- 산학협력 활동계획서 - 출장결과보고서	가산점	10점
			Silver 등급		가산점	5점
8	산업체 파견활동	연구년 또는 방학기간 동안 국내외 기업에서 1개월 이상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한 실적		- 산학협력 활동결과물 - 출장결과보고서	파견건수	50점
9	산업체 방문특강	산업체로부터 의뢰받아 방문특강을 실시한 실적		- 특강 의뢰공문 - 특강 증빙자료 - 출장결과보고서	특강건수	10점
10	산업체 교보재 기부(기증)	교보재 획득	자산가치 10억이상 교보재 기부	- 기부금영수증 - 기증서	기부건수	100점
			자산가치 5억이상 교보재 기부		기부건수	50점
			자산가치 1억이상 교보재 기부		기부건수	20점

- 주) 1. 현장실습: 교육내용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과 실습기관 간의 협약체결 등을 통해 현장에서 이뤄지고 학점으로 인정되는 대학 교육과정(학기제는 14주(500시간) 이상, 계절제는 4주(160시간) 이상 기간동안 운영 기준)
2.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중에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는 교육활동
3.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대학과 산업체 간의 산학협력 계약 또는 협약 체결하여 가족회사를 유치한 후 산업체에 자문·기술지원 등을 통해 전담하여 관리한 실적
4.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완료된 산학협력실적 이외 기타 산학협력 교육활동실적(업적평가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당해 연도 실적)을 재임용 및 승진임용 평가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

특임교원 업적평가서

피평정자 성명 : _____ 직급 : _____ 소속 : _____

(해당란에 √표시)

영역	특임업무 내용	성취도					추진결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특임 업무 (100)	1.						특임업무 추진결과는 학기별로 별도작성
	2.						
	3.						
	4.						
	5.						
총점 (100점)		성취도 (점)					

※ 특임업무의 내용에 따라 성취도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종합의견	
-------------	--

※ 부적격판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피평정자의 업적평가(특임평가)는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 년 ---- 월 ---- 일

평가자 _____ (인)

〈별표 6-1〉 실기업적 평가(체육)

구분	평가항목	점수	
본인참가(선수)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200점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 대회	135점	
학생지도	국제대회	국제대회 A급 우승(1위)	60점
		국제대회 A급 준우승(2위)	50점
		국제대회 A급 3위	40점
		국제대회 B급 3위 이상	15점
	전국대회	전국대회 A급 우승(1위)	20점
		전국대회 A급 준우승(2위)	10점
		전국대회 B급 3위	5점
	국가대표 선발		25점

〈별표 6-2〉 실기업적 평가(조리)

구분	평가항목	점수	
본인	국제대회 A급 본상	200점	
학생지도	국제대회	국제대회 A급 대상/금상/금메달(1위)	60점
		국제대회 A급 최우수상/은상/은메달(2위)	50점
		국제대회 A급 동상/동메달(3위)	40점
		국제대회 B급 동상/동메달 이상(3위 이상)	15점
	전국대회	전국대회 대상/금상/금메달	20점
		전국대회 최우수상/은상/은메달	10점
		전국대회 동상/동메달(3위)	5점
	국가대표 선발		25점

※ 전국대회 대상/금상/금메달 : 종목별 참여선수 중 1등에게 1명 수여되는 경우

※ 전국대회 최우수상/은상/은메달 : 종목별 참여선수 중 상위 상 포함 2등에 해당 2명 이내 수여되는 경우

※ 전국대회 동상/동메달 : 종목별 참여선수 중 상위 상 포함 3등에 해당 3명 이내 수여되는 경우

〈별표 6-3〉 실기업적 평가(뷰티디자인)

구분	평가항목		점수
본인	국제대회 A급 본상		200점
학생지도	국제대회	국제대회 A급 대상/금상/금메달(1위)	60점
		국제대회 A급 최우수상/은상/은메달(2위)	50점
		국제대회 A급 동상/동메달(3위)	40점
		국제대회 B급 동상/동메달 이상(3위 이상)	15점
	전국대회	전국대회 대상/금상/금메달(1위)	20점
		전국대회 최우수상/은상/은메달(2위)	10점
		전국대회 동상/동메달(3위)	5점
	국가대표 선발		25점

※ 전국대회 대상/금상/금메달 : 종목별 참여선수 중 1등에게 1명 수여되는 경우

※ 전국대회 최우수상/은상/은메달 : 종목별 참여선수 중 상위 상 포함 2등에 해당 2명 이내 수여되는 경우

※ 전국대회 동상/동메달 : 종목별 참여선수 중 상위 상 포함 3등에 해당 3명 이내 수여되는 경우

〈별표 7〉 업적 제출기한 및 승인

분야	구분	평가항목	업적 제출기한	승인절차	비고
교육	수업	강의평가	별도없음	- 전산시스템 활용 후 위원회 승인	
		교육품질개선보고서	소정기간	- 본인 직접 입력 및 위원회 승인	
	학사운영	강의학점	별도없음	- 전산시스템 활용 후 위원회 승인	
		수업편성일			
		학사관리 (상대평가비율)			
	학생지도 및 교육활동	학생지도 충실도 - 상담일지 작성 - 학생지도(상담)만족도	별도없음	- 전산시스템 활용 후 위원회 승인 ※ 면담일지 작성 및 만족도 평가는 면담신청 (학생)→교수 승인→면담일지 작성→만족도 조사(학생)의 절차로 시행됨	
		기타 교육활동	성적평가 자료제출일	- 관련 자료 입력 또는 제출 후 위원회 승인	
	강의방법 혁신	강의방법 다양화	별도없음	- 강의방법 다양화 결과보고서 제출 및 (강의 개선)위원회 승인	
	기타 감점조항	무단결강, 보강계획 미준수	별도없음	- 평가항목 담당 해당 부서장 결재 후 기획연구처로 자료 제출 및 위원회 승인	
		보강이행보고서 기한내 미제출			
		강의시간 및 강의실 무단변경			
		모듈화 시간표 미준수			
		강의계획서 기한내 미입력	별도없음	- 전산시스템 활용 후 위원회 승인	
		기본강의학점(시수) 또는 정규학사과정 강의 학점(시수) 미달	별도없음	- 책임강의학점 미달 교원 관련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 기안 근거	
		성적입력 기한 내 성적 미입력	별도없음	- 성적입력기간 미준수 교원 보고 기안 근거	
		성적 정정(등급 변경), 감사, 성적부여 오류 발생	별도없음	- 성적정정 관련 보고 기안 근거	
		(강의평가 결과) 교수법 및 강의클리닉 미이수 또는 강의개선계획서 미제출	별도없음	- CTL 강의클리닉 이수 결과 및 강의개선계획서 입력 후 위원회 승인	
		출결관리미흡, 교과목 포트폴리오 및 성적평가자료 미제출	별도없음	- 출결점검 결과와 교과목 포트폴리오, 성적평가자료 제출 점검 및 위원회 승인	
		전체 교원 대상 교수법 프로그램 미이수	별도없음	- CTL 교수법 이수 결과 점검 및 위원회 승인	
학사지도 미흡(졸업대상자인 지도학생이 졸업불가 사유 발생)		별도없음	- 졸업사정 관련 보고 기안 근거		
연구	연구실적	연구논문	소정기간	- 본인 직접 입력 후 기획연구처로 별쇄본 제출 및 위원회 승인 - 저서의 경우 원본 1부 제출 및 위원회 승인	
		예체능계 실기업적			
		저역서			
		학위논문			
	학술회의	국제·국내 학술회의 발표	소정기간	- 본인직접 입력 후 위원회 승인	
	교책연구	입학홍보 지원 TFT	별도없음	- 입학처장이 증빙자료 및 위원(팀원)별 점수를 기획연구처로 제출 및 위원회 승인	
		대학평가인증, 대학기본역량진단, 교육부재정 지원사업신청 지원	별도없음	- 위원(팀)장의 증빙자료 및 위원(팀원)별 점수를 기획연구처로 제출 및 위원회 승인	
대학자체평가					
산학협력	연구 프로젝트	별도없음	- 산학협력단 결재 후 기획연구처로 자료 제출 및 위원회 승인		
	특허 등				

분야	구분	평가항목	업적 제출기한	승인절차	비 고	
봉사	교내봉사	교내보직 위원회	별도없음	- 본인 직접 입력 후 기획연구처 확인 및 위원회 승인		
		TFT 활동	소정기간	- 위원(팀)장이 증빙자료 및 위원(팀원)별 점수를 기획연구처로 제출 및 위원회 승인		
		기타	별도없음	- 평가항목 담당 해당 부서장 결재 후 기획연구처로 자료 제출 및 위원회 승인		
	교외봉사	학술봉사 사회봉사 기타	소정기간	- 본인 직접 입력 후 기획연구처로 증빙자료 제출 및 위원회 승인		
		수상	정부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이사장 총장, 장관, 도지사 표창	소정기간	- 본인 직접 입력 후 기획연구처로 증빙자료 제출 및 위원회 승인	
			학생지도	재학생 총원율 학과 취업률	별도없음	- 평가항목 담당 해당 부서장 결재 후 기획연구처로 자료 제출 및 위원회 승인
	감점조항			교원 품위손상 행위	별도없음	- 평가항목 담당 해당 부서장 결재 후 기획연구처로 자료 제출 및 위원회 승인
	산학협력실적 (산학협력중점교수)		전체 평가지표	소정기간	- 관련 자료 입력 또는 제출 후 위원회 승인	
	특임실적 (특임교수)	특임업무	소정기간	- 본인 직접 교무처로 증빙자료 제출 및 평가자 평가 - 위원회 승인		

※ 단, 업적제출기한이 평가기간 만료와 중복되는 경우는 평가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가 업적제출기한임